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1. 24

다. 상정일자 : 2003. 1. 24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나. 개정사유

- 현행 조례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시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장애인수첩사본 제출을 삭제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 주요내용

-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설치허가 신청서와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4조제2호의 장애인 수첩 사본을 삭제함.
-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조례 제6조제1항중 장애인단체를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장현법)

- 본 조례안에 별다른 의견 없음.
-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장애인, 장애인단체등”을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 (생략)	제4조(신청) (생략)
1. (생략) 2. 장애인수첩사본 1부	1. (생략) 2. (삭제)
제6조(설치의 제한) ①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 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의 제한) 장애인이 장애인 단체 등이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